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 11월 28일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상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3년 11월 15일 (금)

나. 제출자 : 마포구청장

3. 행정건설위원회 회부일자

2013년 11월 19일 (화)

4. 관련근거

가.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및 제22조(주차 요금 등의 사용 제한), 제32조(이행강제금)

나.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및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 · 운용)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마.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안전행정부 발행 160쪽)

바. 지방예산 질의회신 사례집(2011.3월 행정안전부)

5. 개정이유

상위법에 근거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규정 정비 및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세출규정을 신설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6. 주요 개정내용

가. 세입근거 항목 추가 (안 제3조)

-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나. 특별회계 세출 규정 신설 (안 제4조 제2항)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 일반회계로의 전출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7.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에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추가하고, 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 중 잉여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또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재정운영 및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 안 제3조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에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이행 강제금의 징수금’을 추가하고
- ▶ 안 제4조 제2항을 신설하여 마포구 재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 또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단,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단서 규정을 두었음

-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를 말하는 바, 구청장은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의거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으며,
 - ▶ 세입에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을 추가하는 것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규정된 내용을 이행하는 사항이며,
 - ▶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항목에 ‘일반회계로의 전출’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조항 신설은,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세입이 줄고 복지사업비 등 경직성 경비의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구 재정이 매우 어렵고, 서울시 자치구 중 강동구 외 5개 구도 조례를 개정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비교적 여유가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 잉여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관련 규정과 질의회신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안전행정부 예산 편성 지침과 질의회신에 따르면 특별회계의 성격 및 설치 목적상 다른 회계로의 전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수년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전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구 재정운영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는 등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주차장 특별회계의 재원 중 주차요금과 이행강제금은 주차장법 제22조와 제32조에 의해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어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세입과 세출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세입)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제3조(세입) _____ _____.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삭제	12. <u>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u>
13. · 14. (생 략)	13. · 14. (현행과 같음)
제4조(세출) (생 략)	제4조(세출)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포구 재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에는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7호, 제9호 및 제12 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u>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 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2. 일반회계로의 전출(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 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 세입세출 결산 현황 (2011~2013년)

(단위: 천원)

회계년도	세입결산(A)	세출결산(B)	잉여금(C=A-B)	순세계잉여금(D)
2013 (예상)	58,659,477	10,000,000	48,659,477	48,000,000
2012	53,618,026	8,831,712	44,786,314	44,717,528
2011	48,169,939	9,492,868	38,677,071	38,185,028

※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C)에서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을 제외

○ 세입 세부내역 (2011~2013년)

(단위: 천원)

회계 년도	세입 내역							
	합계	잉여금	주차요금	이 행 정제금	과태료	이자	보조금	기타
2013 (예상)	58,659,477	44,717,528	6,970,000	40,000	5,700,000	1,200,000		31,949
2012	53,618,026	38,677,071	7,355,644	230,016	5,828,506	1,196,716	307,000	23,073
2011	48,169,939	32,878,496	7,179,780	8,640	6,707,099	960,142	404,000	31,782

서울시 자치구 개정 현황

■ 조례 개정 자치구

구명	조례 내용	비고(개정일)
강동	구 재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회계의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때에는 예산편성 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다만, 제3조제1호, 제3호, 제7호, 제10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	2013.09.17
구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경제위기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구 세입이 감소하고 재정이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법 제22조의 규정이 정한 주차요금 등을 제외한 주차장 특별회계 세금중 일부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1998.12.12
송파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다만, 제3조제1호, 제3호, 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	2011.10.17
영등포	구 재정 여건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일반회계 전출금. 다만, 제3조제1호, 제3호, 제5호, 제7호, 제10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4조제8호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13.09.23
은평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다만, 2013년도에 한하여 전출하며 제3조제1호, 제3호, 제7호, 제11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	2013.10.31
중랑	구 재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다만, 제3조제1호, 제4호, 제5호, 제11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	2011.10.17

※ 자치구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 현황

- 송파구(500억원), 강동구(300억원), 구로구(30억원), 중랑구(20억), 은평구(20억원 예정), 관악구(70억원 검토)
- 2013년 기준 타구 주차장 특별회계 가용재원 현황(세부내역 별첨)

금액	0원	10억 미만	50억 미만	100억 미만	100억 이상	비고
자치구	6	4	9	2	3	우리구 330억원

자치구 주차장 특별회계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자치구	2013년도 본예산 편성 현황		비고
		예 산 액	예비비	
1	종로	33,054		
2	중구	27,216		
3	용산	20,958		
4	성동	15,415	4,465	
5	광진	11,472	968	
6	동대문	13,300	4,169	
7	중랑	8,171	771	2012년 20억
8	성북	22,460	13,094	
9	강북	9,061	734	
10	도봉	4,950	1,095	
11	노원	11,655	4,057	
12	은평	11,354	3,971	2014년 20억 예정
13	서대문	8,606	3,235	
14	마포	44,107	33,846	
15	양천	16,590	3,880	
16	강서	12,068	1,996	
17	구로	10,000	309	2011~2012년 30억
18	금천	12,121		
19	영등포	35,310	12,235	
20	동작	12,387	2,828	
21	관악	19,296	6,376	
22	서초	34,148	22,566	
23	강남	16,420		
24	송파	24,742		2011~2013년 500억
25	강동	24,431	8,779	2011~2013년 250억 2014년 50억(예정)

질의회신 사례

제 목 : 주차장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지 여부
(재정정책과-1067, 2010.3.3)

[질의]

- 「지방재정법」제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 특별회계 여유자금의 일반회계 전출 가능 여부

〈회신〉

-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면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특별회계의 성격 및 설치 목적상 다른 회계로의 전출은 원칙적으로 제한 됩니다.
 - 다만, 당해 특별회계 관련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출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법률인 주차장법 제22조 및 제32조제7항은 주차요금과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장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예산 질의회신 사례집 2011.3)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 (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6.8>

② 생략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 ⑤ 생략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생략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6.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 ⑦ 생략

제22조(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4조제1항에 따라 받는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32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2 생략

② ~ ⑥ 생략

⑦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용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관리기금"이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2. "여유자금"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운용하는 각종 기금이 해당 회계연도에 필요한 일상적인 운용자금과 목적수행을 위한 필요한 자금 등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3. ~ 4. 생략

제3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관리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통합관리기금의 재원)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기금의 여유자금에서 예탁금 자금
2. 타기관, 단체로부터 출연·예탁금
3. 통합관리기금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수익금
4. 기타 수익금

제5조(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통합관리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9.22>

제6조(통합관리기금의 용도)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역 SOC사업 등 도시기반시설의 조성에 소요되는 일반회계에 대한 자금융자
2. 타기금 및 주차장 등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의 융자
4.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
5.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수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안전행정부]

지방예산 건전운용 원칙 (책자 160쪽)

특별회계예산은 설치 근거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한 목적에 한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일반회계 예산과의 전·출입은 자치단체 자금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

※ 수년간에 걸쳐 특정 특별회계로부터 계속적으로 전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